

##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 질병관리청,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개발
- 검진의무기관의 잠복결핵감염 이해,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결핵 예방관리 수행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4.8.).

\*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sup>①</sup>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sup>②</sup>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 ~ ’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 ~ ’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① 질병관리청(<http://kdca.go.kr>) ②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③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붙임> 1.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주요내용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3.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0000)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유진 (043-719-7316)





주요내용

[총론]

-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권고
- 결핵 발병 의학적 고위험 질환자는,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를 적극 권고
- 미치료자의 경우 철저한 미치료자 관리를 권고

[검진 대상자]

-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의학적 고위험군(「결핵 진료지침(5판)」을 따름)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
-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진단]

-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활동성 결핵을 배제해야 함
- 활동성 결핵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유보
- 면역저하자의 잠복결핵감염 진단기준은 「결핵 진료지침」을 따름

[미치료자 관리]

- 치료 시작이 어려운 경우 잠복결핵감염 진단일 기준 최소 2년 동안 추적 관찰 권고
- 미치료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진단일 기준으로 최소 2년까지 연 2회 흉부 X선 검사 고려
- 미치료자는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핵 관련 증상 발생 시 결핵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기저질환 등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3~6개월 뒤 치료 시작 가능성을 재평가

[치료 결정]

-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치료를 권고 본인의 동의에 따라 치료를 결정
- 대상자의 연령, 위험요인 혹은 결핵균에 대한 노출의 빈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 치료시작 여부를 결정
- 치료의 이득과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이 큰 경우 추적관찰을 권고
-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관리를 따름
-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권고

[약제 선택]

- 리팜핀을 포함한 단기요법인 리팜핀 4개월 요법, 3개월 이소니아지드/리팜핀 요법을 권고
-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

[모니터링]

-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하고, 기저질환 및 복용약물 등 질병 상태 문진
- 치료 시 매달 부작용에 대한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하고, 약물 순응도를 확인
-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활동성 결핵 치료 중 생긴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따름

[치료판정 및 추구관리]

-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약제의 최소 80% 이상을 복용한 경우 치료 완료한 것으로 평가
- 정해진 기간에 최소 80% 이상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치료를 고려
- 잠복결핵감염 치료 미완료자는 미치료자 관리 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

□ **잠복결핵감염 개요**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참고]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 * 초기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중 전파
신고 의무	해당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 **잠복결핵감염 검진**

- (접촉자 검진)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되,
  -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시행 권고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 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 잠복결핵감염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단,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리플렛

\* 결핵제로(<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 홍보자료 > “2022년 잠복결핵감염 사업 홍보물”

**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면?**



결핵제로 [tbzero.kdca.go.kr](http://tbzero.kdca.go.kr)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및 국가결핵관리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및 가까운 보건소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결핵 예방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침, 이빨게 지켜주세요!



기침, 재채기 할 땐 손이 아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휴지가 없을 시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기침,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고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기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진행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하기

잠복결핵  
감염 +  
바로알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완료 시 83% 결핵 예방

**잠복결핵감염이란?**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핵	잠복결핵감염
증상 유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증상 없음
전염성 유무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전염성 없음
환자 여부	환자	환자 아님
치료 필요성	반드시 치료 필요	치료 권고
검사 방법	흉부X선 검사, 객담검사	면역학적 검사 (TST, IGRAs)*

\* 두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하루 평균 63명의 결핵환자 발생

2년 이내

5%

2년 이후

5%



결핵균 감염 시 총 10%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가 결핵으로 발병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약 5% 더 발병하여 총 10%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83% 결핵 예방**

3



잠복결핵감염 양성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률을 약 83% 낮출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이라면 무료로 치료하기**  
\*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상담에 따라 세 가지 요법 중 한 가지 선택

9개월

이소니아지드

4개월

리팜핀

3개월


이소니아지드 + 리팜핀



무료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

4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무료이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금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단,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산발)급여, 상급병실료(2~3인상) 및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은 제외



면제 면제